의 안 번	호	제	ই
의	결	20 .	• •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# 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연구·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 근거 마련(안 제7조제4항)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당 2년의 범위
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정

※ 적용 예시: (현행) 최대 5년 → (개선) 최대 5년 + 최대 2년 + 최대 2년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## 대통령령 제 호

#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시운행의 허가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자율주 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이 영 시행일로부 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임시운행의 허가 등) ① ~	제7조(임시운행의 허가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	4
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・연구	
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	
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	
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</u> , 국토교통부령으로
	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
	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
	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# 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연 락 처